

-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(안)-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제14789호 '95.10.19)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과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 난립으로 농촌 지역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뿐 아니라 심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자연환경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준농림지역내 식품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조례안제1조 - 조례제정 목적 규정
- 조례안제3조 -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사항 규정(상수도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 외 16개 유형에 관하여 제한내용을 남고 있음)
- 조례안제4조 - 설치제한 고시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외에 추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한지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조례안제5조 - 거리의환신에 관하여 규정

4. 검토의견

-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위암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촌지역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여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, 상수원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, 효율적인 규제를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